

1999. 12.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제정 및 개정,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9.12.13	'99.12.13	'99.12.22	'99.12.28	도로과장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	"	"	"
충주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교통과장

2. 제안설명 요지

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로법(법률 제5894호 '99. 2. 8)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510호 '99. 8. 6)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오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제3조)
- 도로점용료의 감면기준 명시(제6조)
-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점용료 반환금 이자 지급(제7조)
- 점용료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제9조)
- 변상금 징수(제10조)
- 점용료 산정기준표 개정(별표1)

나.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1995. 1. 14.(조례제86호) 제정하여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왔으나 그 동안 자금융자 실적이 없었으며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조례 운용의 의미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주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인 선정에서 영세노점상을 보증하려는 사람이 전무하고
- 융자한도액(500만원)으로는 전업이 불가한 실정이며
- 연 6%의 이자보조금은 영세노점상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현실적으로 입법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함.

다. 충주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주시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차·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함(조례안 제2조)
○ 견인료 및 보관료는 다음과 같이 함(조례안 제3조)

- 견인료

대상차량	견인료	비고
2.5톤 미만	3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6.5톤 이상	50,000원	

- 보관료 :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광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시간 대 적용)을 적용하되 보관 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 시장은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함(조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과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도로점용료 반환시는 연8%의 이자를 가산 지급 및 점용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징수 및 체납 처분토록 명시
-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명시하는 등 본 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 본 조례는 1995. 1. 14일 조례 제86호로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전업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반면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에 의거 영세민 지원사업으로 대체 운영하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 주정차 위반 차에 대한 견인등의 조치사항이 현재 충주시장에게 있으면서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충청북도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오므로서 불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사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의2 제3항)개정 조문에 의거 충주시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제3조8항 전 체관을 외접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답변〉 지금까지 간판 양쪽을 적용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양쪽면 중 넓은 쪽 한 면만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 : 점용료의 징수후 민원인이 사용기간 단축으로 점용료에 대한 이자를 8%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

〈답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충칙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임.

▶ 질의 : 제10조 부당이익금의 징수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답변〉 검토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음.

나.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없 음.”

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 질의 : 견인자동차운영조례가 도에서 충칙이 내려온 것인가?

〈답변〉 충칙안이 내려온 것임.

▶ 질의 : 충청북도 전체가 견인비용이 같은지?

<답변> 시 지역은 같고 군은 10,000원 낮은 실정임.

▶ 질의 : 도조례에 의거 견인한 실적 있는지?

<답변> 없으며 준칙에 의거 시조례를 우선 기초로 제정하는 것임.

▶ 질의 : 견인자동차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는지?

<답변> 견인자동차가 없어 계약을 통하여 대행하여야 함.

▶ 질의 : 제2조 및 제4조의 문항에 괄호에 문구를 계속 연결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답변> 검토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임.

5. 심사결과

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의결[별지]

나.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 수정의결[별지]

6. 기타

- 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1부
- 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별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점용료의 반환)중 “이 경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변상금의 징수)중 “도로법 제49조” 다음에 “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를 삽입한다.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7조(점용료의 반환) - - - - - <u>이 경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u> <u>하여 반환한다.</u>	제7조(점용료의 반환) - - - - - (삭제)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u>소설</u>)의 규정에 의한 - - - -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 - - -

[별지]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차량의견인 보관등)②항중“(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하고

안 제4조(부과징수)①항중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안 제6조(대행비용의지급)①항중 “뺀”을 “제외한”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차량의견인 보관등)①(생략) ②- - - - - - - - - - - - - <u>(별지 제1호서식)</u> 에 의하여 - - -	제2조(차량의견인보관등)①(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 - - <u>별지 제1호서식</u> 에 의하여 - - -
제4조(부과징수) ①- - - - - <u>(별지 제2호서식)</u> 및 <u>(별지 제3호서식)</u> 의 납부고지서 - - - - -	제4조(부과징수) ①- - - - - <u>별지 제2호서식</u> 및 <u>별지 제3호서식</u> 의 납부고지서 - - - - -
제6조(대행비용의지급)① - - - - -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 - - - -	제6조(대행비용의지급)① - - - - -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 - - - -